

호반서밋 품무Ⅱ 오피스텔 분양광고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호반서밋 품무Ⅱ는 대표 분양상담전화(1670-6535)를 통해 분양광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문의전화수가 많아 연결 대기 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의 경우 고객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하여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 본인이 분양광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확인하고,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직접 발급받아 해당사항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신청 전 반드시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2021.01.01.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6.05.22.) 기준입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경기도 김포시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고 거주자 우선 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중복청약 유의사항 : 1인당 1실(건) 청약 가능하며,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전부가 무효처리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오피스텔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100실 미만으로 건축되는 오피스텔로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라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전매제한 등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본 오피스텔은 공급물량의 90% 예비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당첨자 현황은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hobansummit-pungmu2.com>)를 통해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접수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
| 일 시 | 2026.06.01.(월), 2026.06.02.(화), 2026.06.04.(목) | 2026.06.10.(수) 16:00 이후 | 2026.06.22.(월) ~ 2026.06.25.(목) |

| | | | |
|-----|--|--|--|
| 방 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은행창구 청약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청약Home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10:00~16:00 건본주택 방문계약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1670-6535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유형 | 공동 인증서 | 금융 인증서 | 네이버 인증서 | KB국민 인증서 | 토스 인증서 | 신한 인증서 | 카카오 인증서 |
|---------|-----------|-----------|------------|-------------|-----------|-----------|------------|
| 오피스텔 | | | | | | | |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김포시청 주택과 - 19447호(2026.05.21.)로 분양신고**

■ 본 건축물은 김포시 '2026-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6.03.06.)'을 통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임

■ 공급위치 : 김포 풍무역세권 C5블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27-1 일원)

■ 공급대상물

- 대지면적 : 사업부지 33,770.0000㎡(오피스텔 대지지분: 2,989.0714㎡)
- 건축물 연면적 : 199,792.8195㎡(오피스텔 : 17,943.5360㎡)
- 공급규모 : 지하 2층 ~ 지상 26층 1개동, 오피스텔 총 98실(오피스텔동의 경우 1개 동으로, 동 구분이 없으나 청약홈 조회 시 1동으로 표기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대수 : 135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2022-01-13)(일반상업지역), 고도지구(공항고도제한해발112.86m~371.43m미만), 지구단위계획구역(풍무역세권_스마트도시과 확인), 중로1류(폭 20m~25m)(중로1-4)(저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김포시 가축분뇨의 처리 및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 「공항시설법」 : 장애물 제한표면, 진입표면구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 상대보호구역(김포 풍무역세권 대학교)
-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성장관리권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대상자:외국인등 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지정기간:25.8.26.~26.8.25.)토지정보과문의)

■ 내진설계 등급 :

- 본 건축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5의2호. 규정에 의거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내진 I 등급으로 이는 실시설계 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유효지반가속도(S) | 지반의 종류 | 중요도계수(IE) | 내진설계범주 | 내진등급 | 반응수정계수(R) |
|------------|----------------|-----------|--------|------|-----------|
| 0.176 | S ₄ | 1.2 | D | I | 4.0 |

■ 분양사업자, 분양대행사 및 시공자의 명칭 - 분양사업자 및 시공자 : (주)호반건설 / 분양대행사 : 씨앤에이개발(주)

■ 입주예정일 : 2030년 1월 예정(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정은 추후통보)

■ 분양대금의 관리자와 분양사업자간의 관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

- 본 사업은 시행 및 시공자인 (주)호반건설과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간의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약정에 따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서 공급(분양)대금을 관리합니다.

■ 건축물의 층별 용도

| 구분 | 용도 |
|-----------|--------------------------------|
| 지하 2층 | 기계실, 저수조실, 자주식 주차장 |
| 지하 1층 | 전기실, 발전기실, 자주식 주차장 |
| 지상 1층 | 부대시설(비주거 관리사무소, 근로자휴게실) |
| 지상 2층 | 부대시설(비주거 커뮤니티센터),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 지상 3층~26층 |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

[단위 : 실, m²]

| 타 입 | 공급호실(수) | 공급면적(m ²) | |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
| |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소 계 | | | |
| 840 | 98 | 84.9760 | 33.1306 | 118.1066 | 64.9905 | 183.0971 | 30.5007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실, 원, VAT 포함]

| 타 입 | 층 | 공급 호실수 | 공급금액 | | | | 계약금 (10%) | | 중도금(60%) | | | | | | 잔금 (30%) |
|-----|--------|--------|-------------|-------------|------------|-------------|------------|------------|------------|------------|------------|------------|------------|------------|-------------|
| | | | 대지비 | 건물비 | 부가세 | 계 | 계약시 | 입주지정일 | | | | | | | |
| | | | | | | | | 계약30일내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
| 840 | 2층 | 2 | 199,303,560 | 257,360,400 | 25,736,040 | 482,400,000 | 10,000,000 | 3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48,240,000 | 144,720,000 |
| | 3층 | 4 | 203,724,265 | 263,068,850 | 26,306,885 | 493,100,000 | 10,000,000 | 3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49,310,000 | 147,930,000 |
| | 4층 | 4 | 208,186,285 | 268,830,650 | 26,883,065 | 503,900,000 | 10,000,000 | 40,390,000 | 50,390,000 | 50,390,000 | 50,390,000 | 50,390,000 | 50,390,000 | 50,390,000 | 151,170,000 |
| | 5~9층 | 20 | 212,606,990 | 274,539,100 | 27,453,910 | 514,600,000 | 10,000,000 | 4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51,460,000 | 154,380,000 |
| | 10~19층 | 40 | 217,027,695 | 280,247,550 | 28,024,755 | 525,300,000 | 10,000,000 | 42,530,000 | 52,530,000 | 52,530,000 | 52,530,000 | 52,530,000 | 52,530,000 | 52,530,000 | 157,590,000 |
| | 20층이상 | 28 | 221,448,400 | 285,956,000 | 28,595,600 | 536,000,000 | 10,000,000 | 4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53,600,000 | 160,800,000 |

※상기 공급금액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한 금액입니다.

■ 오피스텔 공통사항

- 계약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 면적(m²) × 0.3025)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대지지분의 증감은 제외)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기계실, 전기실, 복도, 계단, 로비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주차장 및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 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관리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오피스텔 계약자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분양금액은 층, 향, 구조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분양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분양대상 오피스텔 98호실은 1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약 신청 전 견본주택(1670-6535)을 방문하셔서 상세 호실별 오피스텔 공급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거실 또는 침실에 기둥 또는 벽이 위치하며, 그에 따른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도·홍보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단,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함).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50%는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은 당해건축물의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상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시기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단, 별도의 고지 및 안내가 없는 한 상기 예정 일자에 따라 중도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2

청약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최초 분양광고일(2026.05.22.)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의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은 1인 1실(건)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2실(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공급물량의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신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당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 구 분 | 청약신청 | 당첨자발표 | 서류접수 및 계약체결 | 당첨자선정 및 동호수 결정방법 |
|-----|---|-------------------------|--|-----------------------------------|
| 일 시 | 2026.06.01.(월), 2026.06.02.(화), 2026.06.04.(목) | 2026.06.10.(수) 16:00 이후 | 2026.06.22.(월) ~ 2026.06.25.(목) 10:00~16:00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 추첨에 의해 신청유형(타입)별 |

| | | | | |
|-----|--|--|--|--------|
| | 09:00~17:30 (은행 방문신청의 경우 은행 영업시간 내) | | | 무작위 결정 |
| 장 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은행창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반써밋 풍무Ⅱ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청약신청 안내

| 구 분 | 내 용 |
|-----------|---|
| 이용안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체한도 확인) |
| 이용방법 및 절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은행 이용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① 접속 :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청약신청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 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 구 분 | 청약신청금 | 내 용 |
|-----|-------------------|--|
| 공통 | 1,000,000원(금일백만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가능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 구분 | 구비사항 |
|----|------|
| | |

| | | | |
|---------|--|--|---|
| | 본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일반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
|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본인발급분, 오피스텔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p>※ 대리인 계약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인감증명서 구비)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
| 법인 신청 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p>※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p> | | |

※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 (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건분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사업주체는 계약체결 시 동일인의 중복 당첨을 모두 무효처리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중복 당첨으로 인한 당첨 탈락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5.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관련 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청약신청금은 청약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됩니다(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동·호수를 무작위로 전산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 선정 : 신청타입별 **900%**를 무작위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일시 | 당첨자 발표 장소 |
|----------------------------|---|
| 2026.06.10.(수) 16:00 이후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청약당첨조회 →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도시형/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 **추첨 방법 및 안내사항**

| | |
|--------------------|--|
| 당첨자 선정 및 동·호실 결정방법 | •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 내에서 동·호수와 당첨자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결정함 |
| 기타사항 | • 타입별 900% 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 **당첨자에 대한 안내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수의 분양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 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 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인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미계약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분양모집은 건축허가 사항 및 계약 장소에 비치한 설계도서에 준하여 공급합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 구 분 | 환불방법 |
|---------|---|
| 환불대상 |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한 신청자 전원 |
| 환불기간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 인터넷 청약자 |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은행(창구)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을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자동 환불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 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되며, 환불금액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 계약체결 시간 | 장 소 | 계약금 납부 |
|---------------------------------|-------------|-------------------------------------|-------------------|
| 2026.06.22.(월) ~ 2026.06.25.(목) | 10:00~16:00 | 호반써밋 풍무Ⅱ 견본주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 아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는 분양대금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금 및 분양(공급) 금액 납부계좌

※ 분양자들에게서는 분양대금(중도금 및 잔금 포함)을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분양대금관리자로 명시된 납부계좌와 예금주를 필히 확인 후 분양대금관리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계좌 이외의 계좌로 납부 시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납부한 분양대금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비고 |
|------|----------------|-------------|--|
| 수협은행 | 1010-2788-0749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1506동 101호" 당첨자 홍길동 → 15060101홍길동) |

- ※ 상기 계좌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중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호실별 부여되는 개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 개인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호실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 ※ 분양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를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및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 본인 계약시 | • 계약금 입금확인증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통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
| 법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및 사업자 등록증 • 법인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법률상 토지취득허가서 |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서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본인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당사 견본주택 내 비치)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6.05.22.)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는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은 취소하고 고발 조치될 수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사업주체로 귀속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분양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내에 비치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분명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귀속됩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사정으로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에도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공급계약서 참조)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에 따른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며,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균등 분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분양계약자가 분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최초 계약일 이후 잔여 호실에 대해 호실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이 본 오피스텔을 계약할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제9-42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에 의거 계약자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또는 행정 처벌로 인한 계약의 무효 및 과태료 대납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에 관한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와 금융기관 간의 중도금 대출 알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아래 사항들은 중도금 대출의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관한 안내 사항이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의 알선, 대출금액·대출 조건 및 대출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보장하거나 보증하지 않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 상담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 여부에 대한 확정을 할 수 없으며, 이를 내용으로 하는 어떠한 보장 또는 보증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대출 여부는 계약자의 대출 적격사유 등을 고려하여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자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대출 알선이 제공되지 않거나, 알선이 제공될 경우라도 계약자의 대출비율이 축소되거나 대출 부적격 등으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본 오피스텔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공급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리 등 대출조건은 대출 실행 시점의 금융시장 상황, 금융기관의 조달금리 및 내부 여신정책, 사업장별 사업조건, 대출 규모, 보증기관의 보증조건, 대출 실행 시기, 대출 취급 구조 및 계약자별 신용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결정되므로 비슷한 시기에 중도금 대출을 취급한 인근 사업장과 대출조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안 받아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중도금 대출 취급 금융기관을 선정하며,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금리 차이, 대출조건 차이 또는 금융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등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60% 범위(중도금 1회부터 중도금 6회까지) 내에서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알선을 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의 의무 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 제공에 불과함)
- 본 오피스텔은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 조건이 각 호실별, 각 개인별로 다르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를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 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기간 개시일의 전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기간 내 미납 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자, 대출규제 대상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됨) 하며,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따라 사업주체는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분양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을 고려한 대출(이하"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 취급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세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 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금융관련 정부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 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 대금 납부 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분양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 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 대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분양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에 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의무 사항이 아니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 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 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부 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해당 오피스텔의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준공 후 소유권이전 등기 및 대출 은행의 1순위(제2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제2금융기관의 2순위 포함) 근저당 설정 시까지 위 표시 부동산에 임대차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금액은 준공 후 후취담보 취득 시 담보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선택품목 안내

■ 추가 선택품목 안내

(1) 시스템 에어컨

(단위: 원, VAT포함)

| 구 분 | 선택안 | 설치 개소 | 설 치 위 치 | 설치금액 | | 비 고 |
|-----|-----|-------|----------------|-----------|-----------|-----|
| | | | | 일반형 | 고급형 | |
| 84O | 1안 | 2 | 거실+침실1 | - | 1,400,000 | - |
| | 2안 | 3 | 거실+침실1+침실2 | 1,800,000 | 3,700,000 | - |
| | 3안 | 3 | 거실+침실1+침실3 | 1,800,000 | 3,700,000 | - |
| | 4안 | 4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2,900,000 | 5,300,000 | - |

※ 본 단지의 시스템에어컨은 옵션당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천장형 공기 청정기 (시스클라인)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선택안 | 설치 개소 | 설 치 위 치 | 설치금액 | 비 고 |
|-----|-----|-------|----------------|-----------|-----|
| 84O | 1안 | 2 | 거실+침실1 | 2.200,000 | - |
| | 3안 | 3 | 거실+침실1+침실2 | 3.250,000 | - |
| | 4안 | 3 | 거실+침실1+침실3 | 3.250,000 | - |
| | 5안 | 4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 4.300,000 | - |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선택하신 옵션에 따라 실내 공기 청정능력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는 한국공기청정협회(CA)에서 지정한 소음기준에 부합된 제품이나, 동작에 따른 개인별 소음인지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제품은 천장 빌트인 형태로 설치되는 제품으로 천장에 설치되는 기타 장애물(스프링클러, 감지기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제품 설치에 따라 미설치 호실과 디퓨져, 스프링클러, 감지기, 등기구의 위치 및 설치개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현장형 공기청정기 설치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별 명칭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금액은 디퓨저 등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추가 선택품목 - 마감재 및 가구

현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현관 특화 | - 중문 미설치 - 신발장 | - 3연동 슬라이딩 도어 - 신발장(하부조명) | 1,710,000 | - |
| 홈 오피스 특화 | - 중문 미설치 - 신발장 - 현관 천장: 도배 - 바닥 타일 (600 X 600) - 침실3 여닫이형 목도어 | - 스윙도어 - 신발장(하부조명) - 현관 천장: 시트 패널 - 바닥 유럽산타일 (600 X 1,200) - 침실3 원슬라이딩 도어 | 4,070,000 | 현관 특화 옵션과 중복선택 불가 |

- 현관 특화 또는 홈 오피스 특화 옵션 선택 시, 신발장 하부에 조명이 설치됩니다.
- 홈 오피스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디딤판 형태 및 크기가 변경됩니다.
- 홈 오피스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바닥 타일 마감이 연장 시공됩니다.
- 홈 오피스 특화 옵션 선택 시, 복도 일부가 현관으로 변경되며 해당부위에는 난방배관이 시공됩니다.
- 홈 오피스 특화 옵션 선택 시, 현관 천장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및 스윙도어)은 본공사 시 규격, 하드웨어 사양, 색상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3연동 슬라이딩 도어 및 스윙도어)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벽/바닥 마감재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벽/바닥 마감재 특화 | - 일반 강마루 + 벽지 | - 광폭 강마루 + 복도 및 쇼파 뒷벽 시트 패널 | 1,920,000 | - |
| 거실 아트월 마감재 특화 | [선택1] - 타일 (600 X 1,200) | - 세라믹 타일 | 2,480,000 | - |
| | [선택2] - 타일 (600 X 1,200) - 침실1 목도어+일반형 도어락 - 거실창호 벽 벽지 마감 | - 세라믹 타일 - 침실1 히든도어(세라믹 타일 마감)+고급형 도어락 - 거실창호 벽 시트패널 마감 | 6,920,000 | - |

주방 특화 (가구)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장식장 | - 키큰장 (LPM도어+선반) | - 장식장 (유리도어+유리선반+서랍장) | 3,670,000 | - |
| 냉장고장 | - 일반형 냉장고장 (상부 수납장+키큰장(선반형)) | - 옵션형 냉장고장 (상부 수납장+키큰장(서랍형)) | 530,000 | - |

주방 특화 (마감)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 | | | | |
|----------|--|---|-----------|---|
| 주방 마감 특화 | -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 벽 : 타일(300 X 600) - 기본형 국산 수전 | - 상판, 벽 : 세라믹 타일 - 외산 수전 (KOHLEER) - 아일랜드장 손잡이 간접조명 | 5,200,000 | - |
|----------|--|---|-----------|---|

• 엔지니어드 스톤, 세라믹 타일은 재료의 물성에 따라 이음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나누기 및 디자인 패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드레스룸 특화 | - 세면대 파우더장(뒷벽 건식벽장재) - 슬라이딩장 - 불박이장(LPM도어) | - 원슬라이딩도어 +세면대 파우더장(뒷벽 세라믹타일) - 플랩장+간접등 - 불박이장(유리도어) | 1,580,000 | - |

• 슬라이딩도어는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도어 개폐시 흔들림,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틈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옵션 선택시 제공되는 플랩장과 기본 슬라이딩장의 높이가 다르니, 견본주택 안내사항 참고바랍니다.

□ 조명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거실+주방+침실1 | [거실+주방] - 거실 기본 조명 - 주방 원형 다운라이트 - 거실 커튼박스 조명 미적용 [침실1] - 기본 조명 | [거실+주방] - 거실 마그네틱등 + 원형 다운라이트 - 주방 마그네틱등 - 거실 조명일체형 전동 커튼레일 [침실1] - 원형 다운라이트 | 2,100,000 | - |
| 스위치 특화 | 기본 생활정보기 기본 네트워크 스위치 | 고급형 생활정보기 홈시 스위치 | 470,000 | - |

• 거실 우물천장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 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 액 | 비 고 |
|---------------|---|--|-----------|---------------|
| 욕실1 (공용욕실) | 벽: 국산타일(300X600) 바닥: 국산타일(300X300) 수전류: 국산 기본 (크롬색상) 금구류: 국산 기본 (크롬색상) | 벽: 유럽산타일 (600X1,200) 바닥: 유럽산타일 (300X300) 수전류: 국산 고급형 (유색) 금구류: 국산 기본 (유색) | 2,730,000 | - |
| 욕실2 (부부욕실) | 벽: 국산타일(300X600) 바닥: 국산타일(300X300) 상부장: 기본 여닫이장 수전류: 국산 기본(크롬색상) 금구류: 국산 기본(크롬색상) 샤워부스: 크롬색상 | 벽: 유럽산타일 (600X600) 바닥: 유럽산타일 (300X300) 상부장: 기본 여닫이장+간접등 수전류: 국산 고급형 (유색) 금구류: 국산 기본 (유색) 샤워부스: 유색 | 2,390,000 | - |
| 욕실1,2 | 투피스형 양변기 | 비데일체형 양변기 | 410,000 | *1개소 선택 기준 금액 |

• 공용욕실, 부부욕실 마감 유상옵션 선택시, 코너선반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가전 특화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 | 기본형(무상) | 선택형(유상) | 금액 | 비고 |
|-------|---------|----------------------------|-----------|-----------------|
| 전기 쿡탑 | 3구 가스쿡탑 | 3구 인덕션 (LG / BEI3ASB4BIE) | 1,150,000 | 블랙 |
| | | 3구 인덕션 (LG / BEI3ANHLEBIE) | 1,200,000 | 화이트 |
| 전기 오븐 | 기본 수납장 | 일반형 (LG / MZ385EBTA) | 450,000 | - |
| | | 고급형 (LG / MZ941CLCAT) | 810,000 | - |
| 식기세척기 | 기본 수납장 | 가구패널 (LG / DIE5PT) | 1,100,000 | 주방가구 마감, 열풍건조 X |
| | | 가구패널 (LG / DIE6PT) | 1,380,000 | 주방가구 마감, 열풍건조 O |

*전기쿡탑 유상옵션 선택시, 기본시 제공되는 3구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추가 선택품목 납부 일정(금액) 및 납부 계좌

■ 납부 일정(금액)

| 구분 |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
|-------------------|------|------------|-------|
| | 계약 시 | 2028-09-22 | 입주지정일 |
| 추가 선택품목 일정별 납부 금액 | 10% | 20% | 70% |

※ 최초 추가 선택품목 계약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현장수납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추가 선택품목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에 대해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납부일로부터 환불시까지 별도 이자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 납부 계좌

| 구분 |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금주 |
|---------------|------|----------------|-------------|
| 추가 선택품목 납부 계좌 | 수협은행 | 1010-2788-0749 |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상기 계좌는 추가 선택품목 공사 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과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호실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알릴 예정입니다.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입금 시 반드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기재(예:1506동 101호 홍길동의 경우, 서명란에 "15060101홍길동" 으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부터 잔금은 향후 호실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납부 기일 및 납부 금액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계약서에 지정된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 추가 선택품목은 분양광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은 입주자와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오피스텔 공급계약과 별개임)

• 추가 선택품목에 대해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철근콘크리트 공사 착수 시점 등)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시스템 에어컨은 상기 선택 사항별 위치에 설치되며, 설치 장소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당 실내기/실외기 최대 조합비 120% 이내로 설계되었으며, 설계 범위 내의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경이나 이의 제기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추가 선택품목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거실, 침실1에 기본 적용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을 선택할 경우 타입에 따라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시스템 에어컨 배관이 노출되는 형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서 난방 기능은 없으며, 가동 중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에 필요불가결한 조건으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는 부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견본주택과 달리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실외기는 멀티형(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지만, 계약자가 추가로 에어컨을 설치, 연결하여 가동할 수는 없습니다. 임의로 추가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경우에는 과열로 인한 누전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설치된 실외기 외에,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과도한 전기료, 냉방 효율 저하, 실외기 누전 또는 과열로 인한 작동 중단, 실외기실 온도 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외기용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장비의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기쿠팡” 추가 선택품목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 배관(노즐)은 제거되지 않으며, 배관 말단 부위는 캡 마감 처리할 예정입니다. 추후 가스쿠팡 설치 및 가스배관 연결은 입주자 공사분입니다.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아니하고 견본주택 등에서 별도로 계약 체결한 추가 선택품목(안전 방법 방충망 등) 선택 시 기본으로 시공되는 품목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해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유형, 제품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제품의 품질, 품귀, 생산 중단, 관계사의 도산 및 현장 시공 상황 등에 따라 입주 시 동질,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계약자 안내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호에 따라, 분양받은 자의 사용승인 전 건축물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점검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30년 1월 예정(정확한 준공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자연재해,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등 불가항력을 포함하여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관계자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입주 안내를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본 오피스텔은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서 분양하는 오피스텔로서 전매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 전매 관련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명 이상에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가 변동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시행자", "시공사"의 동의를 득하여 권리의무승계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양도인의 공급계약상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학교 배치 등 관련분야 유의 사항

■ 초등학교

1. 풍무역세권 C5블록 주상복합 입주민 자녀 초등학생은 (가칭)풍무역초등학교에 배정 될 예정입니다.

■ 중학교

1. 중학교 신입생(입학 예정자)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68조 및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에 따라 김포중학군[감정중, 금파중, 김포중, 김포여중, 양도중, 풍무중, (가칭)풍무역중]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중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2. 중학교 재학생의 경우 해당 중학군 내 결원이 있는 중학교에만 전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아울러, 현행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따라 2028학년도 중 김포중학군 내 중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한 경우 2029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풍무역중으로의 전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칭)풍무역중은 김포중학군 내 기존 학교인 김포여중의 남녀공학 전환 및 학교명 변경(2027학년도 예정) 후 신설대체이전(학교명, 학교 역사 등 보존)을 통해 개교 예정입니다.

■ 고등학교

1. 김포시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방법은 향후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

1. 신설 예정교의 개교 여부 및 개교 시기는 교육부 및 경기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승인 여부 및 기타 학생배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배정 방법 등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승인(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 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 본 건축물은 (주)호반건설과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 대리사무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분양수입금은 케이비부동산신탁(주)에서 관리합니다.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은 본 사업의 대리사무신탁사로서 (주)호반건설로부터 위임받은 자금관리업무(통장관리포함)만 제한적으로 수행합니다.
- 분양계약과 관련한 공급자, 매도인 또는 실질적 사업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주)호반건설에게 있습니다.
- (주)호반건설이 부도, 금융거래정지,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 파산신청, 기타 정상적으로 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발생시 (주)호반건설이 보유한 본 사업 시행자 및 매도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양도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분양(매매)목적물의 하자 보수에 관한 법적 책임은 (주)호반건설에게 있습니다.
- 본 건축물과 관련한 분양수입금은 공사비, 사업비, 중도금 대출이자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으며,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은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을 환불받을 수분양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 총액에서 수분양자가 실 납부한 금액의 비율로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액을 결정하기로 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 본 분양광고의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분양사업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본사항

- 오피스텔 단지배치 및 층, 향, 호수별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이 제한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체결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는 840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건본주택에 설치된 타입과 라인에 따라서는 방향이 다를 수 있으니 이점 확인 후 계약 체결 바랍니다.
- 공급 규모 표시 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형별 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 면적(m²) ÷ 3.3058)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호실에 대한 호실구획(호수 및 면적조정) 및 공급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면적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여 넷째자리까지 표시하였고,, 각각의 버림에 대한 오차는 적정할에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당 전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대지지분을 제외한 계약면적의 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폭, 도로레벨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 질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정산 처리되며 계약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건물은 용도별로 별도 구분되어 분양되는 시설이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합건축물로서, 인허가 사항에 따라 주차장 면적은 지하로 배분하여 계약면적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계약자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승인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호실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 및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배치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으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 분진 등으로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등은 별도의 분양시설이므로 계약자는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시설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고, 해당시설 계획(건축, 구조, 기계,

전기 등)은 추후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향후 구조형식과 구조부재(기둥, 보 등)의 크기, 위치, 개수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층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취득세는 납부원인이 발생한 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본 오피스텔을 관계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로 운영하여야 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용도제한 업종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중 잔금납부 개시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다만 건축법 제22조 3항 단서에 따라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입점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는 사용 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15일 이후 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평면도 및 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설치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으며 홍보용 이미지 및 모형에 표현된 내용(부대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조경 및 식재, 주변환경, 부지레벨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 환경 및 주변 도로여건, 개발계획 등 단지여건 및 별도 분양안내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 시스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오피스텔과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사전분양홍보관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에 표현된 입면은 실시공 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관계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으며, 설계 및 공사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공유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 등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오피스텔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실내 무단출입 및 실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 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분양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제16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측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본 광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 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최초 분양광고 공고 전 배포된 홍보물 또는 사업주체에서 배포하지 않은 홍보물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p>분양관련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각종 경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당첨 및 계약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 후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는 입주지정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안내, 유의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공급계약을 분실하였을 경우 계약자가 공급계약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전국일간지에 분실광고를 내고 2주일 후 공증받은 뒤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 소정의 양식에 따른 분실각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 할 시에만 공급계약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공급계약서 재발급 방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해당 층의 공유시설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분쟁사항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한 뒤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공 중에 샘플실 및 현장사무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협의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분양대행사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대행사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관계자(사업주체,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변경시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 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 <p>분양광고, 광고물 관련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광고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조성계획(5호선 연장, 김포 메디컬캠퍼스, 공원 등)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인근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관계기관의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유해시설의 위치는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표시, 설치된 시설의 색상 및 크기, 형태, 작동방법은 실 착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각종 사인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디스플레이(전시용품)용으로 실제 시공 시 설치되지 않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문프레임 규격 및 색상 및 형태, 유리사양, 외벽 마감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은 계약자의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의 조경계획 및 식재, 시설물, 부대복리시설, 주변환경, 제연휨룸 및 휨룸용 드라이에어리어(DA), 부지 고저차, 공사시 필요한 설비기기와 출입문 등은 실제 |

| | |
|-----------------------------|---|
| | <p>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서 등 각종 인쇄물, 모형 및 CG(조감도, 투시도 등)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시 설치 될 필요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건물의 명칭, BI, 색채 계획 등은 향후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심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 설치 계획에 따라 단지 BI 설치 여부 및 설치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분양광고 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다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또는 사전분양홍보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전단지, 리플렛, 카다로그 등 인쇄물, 견본주택 내 사인물)의 모든 이미지와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 및 색채는 시공 중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일반가구, 수납공간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 내부 및 단지 내외부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현장 시공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 상의 유의 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창호, 현관문, 도어 및 점검구 등은 본 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프레임 일부, 개폐방향,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월패드,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은 동질 및 동급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실내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 사양 및 위치, 환기 디퓨저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 <p>학교 관련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지의 학교설립 및 학생배치는 관할교육청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당사의 사업계획 및 방침과는 무관함. • 본 오피스텔의 입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풍무역세권 내 확보한 부지에 학교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설립이 지연될 경우 인근 학교에 임시 분산 배치될 수 있음 • 중학생은 김포중학군*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경우 원거리 통학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p>* 김포중학군: 김포중, 김포여중, 감정중, 금파중, 풍무중, 양도중 및 중학교 신설 시 (가칭)풍무역중 추가</p> |
| <p>단지 내.외부 관련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과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연결녹지, 학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이 전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자체, 혹은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향후 인.허가 승인사항이 변경될 수 있음. 또한 이에 대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이 경우 입주시기 지연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 |

- 본 단지와 관련한 각종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공사차량통행, 교통장애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따른 불편 내지 생활이익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단지와 인접한 지역의 김포공항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임.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개조 등의 건축행위,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현재와 다르게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 내 건축되는 복합 건축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설계되었으나, 동간 거리가 좁고 배치가 밀집되어 일부 호실은 일조량이 현저히 적을 수 있음. 또한, 인접한 상업 및 업무용지(14층 이하), 준주거용지(10층 이하), 대학교(18층 이하)의 건축물 신축 등으로 인해 일조, 조망, 소음, 빛공해 등 환경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함.
- 도로, 하수, 가스, 공원, 학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므로 사업추진 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해당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1501동,1502동,1505동 인근), 동서측 대로변(대지경계선에서 6M 구간) 및 동남측(1503,1504동 사이)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단지 경계부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또한 추후 시공 시 계획고 등이 변경되어 단지내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보행자도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헨스를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없음.
- 본 오피스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향후 제반사안이 변동 될 경우 입주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 변경사유 발생 시 사전 통지할 예정임.
- 본 광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체결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광고·홍보 유인물(사이버 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공공용지 등) 및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반시설의 미완료로 인한 당 사업지의 정식 사용승인이 아닌 동별준공, 또는 임시사용 등이 불가피할 경우 입주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시공사 및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 요구 할 수 없음.
- 대지경계 및 면적은 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해당 관청의 인허가조건[사업계획(변경)승인,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건축심의조건 등 포함]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단지 내 조경, 단지 내 우·오수처리계획,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및 대지경계 선형, 레벨 등과 같은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본 단지 내·외 및 타 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의 분양단지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단지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오피스텔과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분양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
- 본 단지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인접대지, 도로, 공원, 녹지, 기타시설 등은 현재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당사의 시공범위가 아니며 관계기관 및 해당관청, 해당부지 사업시행자의 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단지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주변 인접대지(주거/상업/업무시설, 준주거용지, 주차장, 광장 등), 보행자도로, 대학교, 어린이공원, 등이 계획됨에 따라 전면조망, 교통체증, 소음발생 및 생

| | |
|--------------------|---|
| | <p>활권의 일부 침해를 받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변 도로 및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통로, 단지 동/서측 대로변 및 동남측 공개공지 설치로 인해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북측 : 공동주택 B4,B5블럭 (30층 이하) / 동측 : 대학교 (18층 이하) / 남측 : 업무시설(14층 이하), 상업시설(14층 이하), 어린이공원(지상) 및 하부 주차장 / 서측 : 준주거시설(10층 이하)) - 단지주변 도로 동/서측 : 폭 30m, 남측 : 폭 20m, 북측 : 폭 24m 도로가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주변도로에 인접한 일부호실의 경우 소음, 진동,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해야 함. • 주출입구 및 보행출입구, 보행자도로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본 단지외 인접한 공원 / 학교시설 계획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및 계단, 산석 등의 설치 위치, 높이, 벽체 두께, 형상, 재질,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기반시설은 실시계획인가 등 인허가청과의 협의에 따라 계획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본 오피스텔 사용검사 시 소음을 재측정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할 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p>설계 유의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본 공사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의 구조계획에 따라 거실, 침실에 기둥 또는 벽이 위치하며 그에 따른 공간 사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모형도·홍보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호실 내 천장은 거실/침실기준 2,300mm로 설계되었으며 우물천장 설치 및 옵션 평면선택 등의 사유로 본 공사 시 천장고 및 실별 바닥단차는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타입이라도 동 조합의 위치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마감자재내용은 호실 및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호실내부 가구 및 거울, 욕조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 세면대 선반하부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욕조 포함). - 고정형 가구 상·하부 및 측면, 후면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 등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아일랜드 하부장 포함). - 주방 상부장 상부 및 측면 후면부, 주방 하부장 하부 및 후면부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거실 아트월은 걸레받이 미시공 됨. - 주방 싱크대 하부, 고정형 가구 하부는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드레스룸 옵션선택시 도배 및 걸레받이 미시공 됨. - 불박이장 가구후면은 별도 마감재 시공되지 않음. - 천장 상부 가려지는 부위는 벽체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무늬코트 상부 코팅은 시공되지 않음. - 기타 마감은 견본주택 등을 기준으로 함. •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506동(2,4호라인)의 경우 일부 발코니 공간이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면해 있어 엘리베이터 사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 • 단위호실 평면 배치에 따라 엘리베이터 샤프트와 계단실에 인접한 침실 등의 경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테리어 디자인에 의해 가구 및 일부 경량벽체 시공에 의하여 일부 면적이 가구 또는 건식벽체 등으로 채워지는 부분이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배치계획에 따라 일부호실의 출입문의 방향은 견본주택 및 카다로그에 안내된 것과 반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별 현관문 및 방화문, 점검도어, 핸드레일, 유리 등은 본 공사시 제조사, 유리, 하드웨어, 프레임 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새시 및 유리, 벽 등 기타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환기 등으로 예방해야 함. (겨울철 실내습도가 높 |

- 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 쉬우며 각 실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진행 중 특정호실을 목업호실로 지정하여 샘플 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정당한 사유이므로 해당세대 수분양자는 입주 전·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여 설치됩니다.
 - 부대시설(관리실, 우편함, 쓰레기 분리수거장,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불법구조 변경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출입구의 사이즈,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과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건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물의 보행동선 및 입면디자인, 색채, 상가의 내부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오피스텔 및 타 시설의 각종 기계설비배관,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배선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우오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의 위치 및 개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량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실은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의 경우 벽체 위치 및 문(출입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 창호 디자인, 프레임 개수 및 사이즈,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실별, 층별, 위치별로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유리 포함)는 향후 풍압, 풍동 등의 구조시험, 추후 본공사 협력 시공업체 선정결과 및 입주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재질, 사양 및 디자인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관리 및 안전상의 이유로 옥상출입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호실 천장내부에 공용배관 및 덕트, 상부실 배관 등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이 설치되어 소음발생 및 유지보수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철거 및 이동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에 의해 벽체 철거/변경시 벽체에 설치된 기구, 배관, 배선 등은 입주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공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일부가 돌출 및 셋백으로 인하여 일조 및 통풍의 불리, 우천시 소음, 조망권 제한, 채광간섭, 빛의 산란 등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소화전 등의 위치 및 오수배관의 위치는 시공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내부 공개공지, 공공보행통로, 근린생활시설, 드라이에어리어(DA), 차량진출입구, 음식물쓰레기보관소, 자전거 거치대 등에 의하여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소방관련 법령에 따라 단지 내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설치 위치는 관할 소방서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형태 및 위치에 따라 외풍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하자판정은 사용승인 도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하자 등에 따른 피해 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됩니다.
 - 본 건물의 명칭, 호표시, 외부 색채 및 경관조명 계획은 향후 관계 기관의 심의/자문 결과 및 현장여건 따라 입주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 및 공법의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현장여건 및 기능/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계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

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분양사업자는 분양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의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주차장은 1506동 전면 및 1505동 서측에, 지하 1~2층, 총 2개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입주자 또는 이용객과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 본 단지의 오피스텔 입주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남측 주출입구 주차램프 (1506동 정면, 1505동 측면) 1개소를 통해 진입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공동주택 주차장과는 완전 분리되어 설치됨. 인근 저층 호실은 차량 통행 및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7m로 규격을 초과하는 차량은 지상의 비상차로 등을 이용하여 각 동별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단지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사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지하 2층 주차장의 차로 높이는 2.3m, 주차구획면의 유효높이는 전층 2.1m로 설계되어 있으나 시공시 각종 배관 설치 등으로 일부 구간 유효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별 지하 평면 구성에 따라 지하주차장 출입시 주차장에 면하거나 복도 형태로 진입 동선이 형성되어 있음. 또한 지하 여건에 따라 각 구간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음.
- 본 단지의 부출입구는 공동주택 입주자 및 근린생활시설 입주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며, 1506동 남측 및 동측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인근 저층 호실은 차량 통행 및 이용객 등으로 인한 소음 및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차단기(주차관제시스템)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일부 계단은 오피스텔과 타 시설이 연결되어 있으며(지하주차장 포함), 유사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주차대수와 주차구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의 층고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타 시설의 주차는 통합으로 관리 운영되므로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가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관리주체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일부는 비상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비상통로가 계획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전기차 주차구획과 충전설비의 설치 수량 및 종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충전설비 설치 공간으로 인해 일부 주차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 관리 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방범용 CCTV는 지하주차장, 단지 차량 출입구, 놀이터, 엘리베이터 내부 및 아파트 주 현관 출입구, 옥상 출입구, 계단실 1층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실 시공 시 수량이나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본 건물은 복합건물로서 원활한 교통통제 및 운영을 위하여 혼용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용도별 주차구획도 혼용하여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일부 주차장 사용구획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일부 실은 경관조명으로 인해 눈부심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본 건축물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건물 배치 특성상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추후 근린생활시설 등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주에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동서측 대로변 및 동남측에 공개공지가 위치하고, 단지 경계부에 보행자도로가 위치하여 소음,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 또한 추후 시공 시 계획고 등이 변경되어 단지내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공공보행통로, 공개공지, 보행자도로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로, 개방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헨스를 설치하거나 폐쇄할 수 없음.
- 공개공지, 조경, 조경시설물 및 사업지내 보행공간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 사업지로 관련 형태, 크기, 디자인 등은 향후 미술장식품 관련 심의를 통해 선정되어, 설치 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저층부 및 인접한 호실은 접근성, 조망, 소음 및 미관상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건물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사용승인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 납부의 주체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실, 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배기팬 등 공용 기기의 유지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하·오수·지역난방·도시가스·한전 등)계획은 인·허가 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지역난방 방식으로 난방 및 급탕이 공급될 예정임.
- 항공법 및 항공법 시행규칙에 의거 건물 옥상층과 건물 외벽에는 항공장애등이 설치될 경우 주간이나 야간에 눈부심이나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항공청과 협의과정에서 위치나 수량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는 1501동 및 1503~1505동 옥상층에 옥외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같은 동 옥상층 및 지하2층 PIT, 1506동 지상19층 EPS/TPS에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 지붕층 및 옥탑층에 위성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연료전지, 태양광, 이동통신중계장치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간섭 및 빛의 산란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바람에 따른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자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갑 등"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함은 지하1층 오피스텔 출입구 인근에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와 동선이 상이할 수 있고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건축물의 관리단이 형성되어 관리를 개시하는 시점까지 분양(공급)계약시 제공받은 관리규약을 준수하여 본 건축물을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용도별로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설치된 부분(전기, 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우수조, 지역열원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 및 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될 예정입니다.
- 단지 경계부는 단지 외부 및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조경수 식재 위치, 마감재료, 형태, 색채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건물 남측에 지하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가 계획되어 있는 바, 인접한 호실에서는 차량 통행에 따른 소음, 차량 불빛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위치는 견본주택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상/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항공장애등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호실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실내조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부에는 공개공지, 전면공지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보관소 및 D/A 구조물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경관 침해 및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역의 타사의 마감사양, 시설 및 조경 등과 본 건축물을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시설, 조경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에는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사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 시공시 호실별 옵션 선택에 따라서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위치, 사양,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입주 시 인수인계 예정이며, 이사용으로 운행 중 인테리어 파손은 입주자 책임 하에 있으며, 시공사에 하자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오피스텔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 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실내 실 간벽은 경량벽체, 조적벽체 등으로 시공되어 소음 및 충격용 전달이 다른 벽체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지 측량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조경석,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 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계선에 인접한 건물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과 레벨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건축물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광고 공고 이전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해 제작·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당 사업부지 내에는 입주자 및 외부 지역주민이 사용 가능한 조경시설이 구성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출입통제 또는 통제를 위한 구조물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 공공장소인 공개공지, 필로티, 제연헬름, D/A(설비 환기구), 자전거 거치대, 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부대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일부 호실은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 등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내 단지모형 등의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호실은 인접시설로 인한 소음 발생, 상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일조권, 조망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의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상가 영업제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의 명칭, 호표시, 건물 외관 및 외부색채, 외부상세계획, 그래픽, 조경 등은 해당관청과 협의(자문) 과정 및 디자인의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경계 담장 설치여부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보행자 출입구는 단지 레벨 등의 사유로 일부 단차가 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지내 교차로 끝부분은 점자블럭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형태로 인해 각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 환기 불리, 소음,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상 호실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부대복리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평면이라도 위치에 따라 입면색채가 상이하니 계약 전 필히 해당 호실 입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호실 내 설치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출입구, 옥외시설물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인접도로,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와 인접한 저층 및 일부 호실은 소음, 매연, 먼지 등의 환경오염,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업부지, 현장여건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차입구, 주차관제시스템의 위치,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해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 구조형식 등이 층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층 및 출입구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시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인접해 있지 않는 일부 호실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호실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각 호실의 홀, 복도 등의 공간은 공용부분으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견본주택상의 단지 모형 등의 홍보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호실 상호간의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단지 배치상 동일 형별(평형)이라도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 후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그사인, 외벽마감, 저층 석재색상,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등의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주변 연결녹지,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 1층 각 동 인근에 설치되며, 1506동 3호라인 전면에 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1506동 1호라인 동쪽과 북쪽에 아파트/오피스텔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각각 설치될 예정으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기 바람. 본공사시 시설물 디자인, 설치 위치 및 크기,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이에 따라 소음, 냄새, 분진 발생 및 조망권 저해할 수 있음을 인지하기 바람. 또한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주변 건물 및 구조물의 신축, 기존 건물의 재건축 및 증축, 단지 내 인접 등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 또는 동파방지장치가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계획은 본 시공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 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자문 및 시공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로 및 주출입구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인원의 출입 통제 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각 호실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호실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다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식재 등에 의해 특정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견본주택에서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보행동선, 안전성, 이용 편의성 등에 따라 본 시공시 위치가 삭제되거나 변경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향과 배치구조 및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 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악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동 지상 1층에 관리사무소 및 근로자 휴게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지상 2층에 오피스텔 입주인 전용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인 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및 부대시설의 실외기가 별도 실외기실(공간) 또는 실과 인접한 외부 공간, 지붕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미관의 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본시공시 위치나 형태, 수량,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필로티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는 동의 상부 및 인접호실은 통행 동선에 의한 소음 및 시각적 간섭,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복도 및 각 실 점유공간 천장 내부 또는 상부장의 공간이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도시가스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근린생활시설 지붕층 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시야 간섭, 조망, 소음, 수증기 및 열기 발생 등 환경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 근로자휴게실 등)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공간) 또는 실과 인접한 외부공간, 지붕에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미관의 저해, 시각적 간섭 및 소음, 진동, 수증기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치를 사전 확인하기 바라며, 본 시공시 위치나 형태, 크기,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소음 진동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분리수거장 주방 탈취설비로 인해 소음, 진동, 냄새, 해충, 조망권, 환경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공간을 공동 사용하며 피트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배선위치 및 오·배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오·배수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용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치에 따라 일부 실에 화재시 필요한 소방설비로 인해 실 사용에 불편이 있을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물 부지 일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지역난방 의무사용 지역)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지상1층에 Dry Area(급배기타워)와 도시가스 관련시설, 맨홀 등 공동사용을 위한 기반시설물이 대지 내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된 점검구 위치 및 크기, 수량은 본 공사시 변경되거나 추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호실 타입별로 설치 위치가 결정되며,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설비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따라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실내 환기 장치 제품 사양 및 위치, 욕실환풍기 제품 사양 및 위치, 환기 디퓨저의 형태와 위치, 온도조절기와 바닥배수구의 제품 사양 및 위치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환기장치 작동 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기구(급/배기용)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사양, 우물천장, 커튼 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각 오피스텔별 냉방설비의 성능은 실별, 위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 공용부(복도 등)에는 냉난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임의로 설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본 건물 전용면적 내 기계설비로 인하여 전용면적 내 입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건물 공용부 및 전용면적 천장 내부가 기계설비 시설물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복도 일부에 근린생활시설용 가스관이 노출 될 수도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수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인근에 맨홀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수도 공급 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본 건물의 소방관련 시스템 및 설비는 본 시공 시 소방법 기준에 따라 허가도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공용복도 및 전용면적 천장내부는 기계설비 및 관련 덕트, 배관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고, 그를 위한 점검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도 및 전용면적내 일부구간 천장고가 낮아지는 등 시공 상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지하주차장 상부 및 피트공간, 각 층의 공용 피트 공간은 각종 기계설비 덕트, 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로 사용되며, 피트의 위치 및 면적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PS(전기실)/TPS(통신실)는 필요한 층마다 설치되어 있으며, 법적 시설로서 그 위치 및 면적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MDF실 및 방재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일부 장비 및 서버는 시설별 공용으로 사용하게 되며,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 및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단위실 및 마감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주택 내 건립되는 오피스텔은 840타입이며, 설치되지 않은 타입은 단위실 모형 또는 카다로그를 참고바라며, 계약 전에 평면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와는 달리 구조변경(확장 등), 난방설치 등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위반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외부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호실별, 층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호실 내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브랜드,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외부창호의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손잡이, 안전난간 설치여부 등은 안전, 외부입면계획 및 관계법령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에 설치되는 현관, 창고, 점검구 등의 도어의 형태와 위치는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실제 시공시 브랜드, 재료, 규격, 사양, 열림(개폐)방향 등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방화문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하여 기계식 도어락이 기본 설치·제공되오니, 이 점 계약 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일부 호실의 외벽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호실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현관 바닥, 욕실 타일 등의 타일나누기가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판 및 현관 디딤판에 시공줄눈이 건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2층~11층 호실의 거실 발코니 외측창은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관계법규 기준에 따라 비상시 소방관이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창으로서, 붉은 색의 외부 식별 표지가 추가로 설치되어야 하며, 호실내 조망, 미관을 저해할 수 있음. |

- 또한 호실내 1개소 이상의 창은 법적 기준에 따라 배연창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배연창 설치시 수동 개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호실의 일부창은 소방기준에 따라 배연창이 적용될 예정이며, 배연창이 설치된 창은 수동 개폐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붙박이류 등이 설치되는 부위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타일, 도장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전기, 설비 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배관점검을 위해 점검구가 욕실 천장, 실 상부 등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품들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본공사 시 동질 또는 동등의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주방 렌지후드에 상부장내 주방용 자동식 소화 설비가 설치되며, 이에 따라 상부장 일부 공간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각 호실 내 현관 및 주방가구 하부에는 난방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내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는 화재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므로 화재 등 비상 시에만 개방하여야 하며 피난구 개방에 따른 인접호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관리는 입주자의 책임임을 인지해야 함. 또한, 천장에는 상부 호실의 하향식 피난구가 돌출되어 설치되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실별(피난층, 필로티 또는 PIT/부대시설 상부 호실 제외)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어 비상시 피난 가능토록 계획되어 있으며, 소방신고 등 인허가 진행중 필요시 완강기 등 피난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하향식 피난구 설치공간 내 피난구의 위치는 실 시공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다용도실은 단열 구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비 난방구역으로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파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수전이 있는 실 등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견본주택의 조명기구, 스위치, 일괄소등스위치, 주방TV, 월패드, 디지털 도어록 등 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각 호실 내 통신단자함, 호실분전반, 스위치, 콘센트 등은 현장 여건에 의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냉방설비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 환기를 위한 환기장치는 실외기실 등에 설치되며, 장비 및 덕트가 일부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 입면 및 내부 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환기장치 및 디퓨저의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내 환기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침실) 내로 전달될 수 있으며, 호실 내 환기장치로 인해 가동 시 장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주방 직배기관은 발코니2(세탁기 상부) 구간으로 배관 루트가 형성되며, 배관커버가 설치됩니다. 배관 계획 및 배관커버 설치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건축(변경) 허가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 개선을 위하여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침실이 인접실 화장실에 면해 있는 경우 물 사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 내 설치되는 약세사리(휴지걸이, 수건걸이, 수전류 등) 등의 설치 위치, 개소 등은 본 공사시 마감치수 및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세탁실내 손빨래수전이 설치 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호실내의 배수구 등 설비위치는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욕실 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나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은 제외됩니다.
 - 욕실 세면대 하부에는 급수 및 급탕을 위한 박스 커버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계량기는 다용도실 또는 실외기실에 설치되며, 현장 조건이나 설계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쿡탑 유상옵선 선택 시 기본으로 제공되는 가스쿡탑은 제공되지 않으며, 전기쿡탑 옵션 금액은 가스쿡탑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및 천장형 공기청정기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장비 및 실내 환기 디퓨저의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반ON 등 스마트홈 서비스는 입주인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연결 환경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스마트홈 서비스의 제공 기능은 연동 환경 및 기술 개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가전제품에 따라 연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체감지기 설치의 지상1~2층에 한하여 설치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각 침실에 적용되는 전자 스위치의 기능은 조명기구 점·소등, 난방제어의 통합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조명기구 점·소등, 난방제어 기능을 분리하여 개별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기국탑 설치 시 전기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부대복리 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패드, 통신인입 맨홀이 단지 내에 설치되므로 일부 호실에서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및 인허가 과정에서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시 성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해 관련법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동 직하부 주차구획은 기둥 및 내력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의 주차공간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으나, 근린생활시설과는 주차장을 공용 사용하며, 이에 따라 사용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고 주차장 진출입 및 이용 동선으로 인해 주변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 계약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의 주차 구획은 각 층마다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주차대수가 일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현황을 충분히 확인 바라며, 주차대수 및 주차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일부 벽면에 분전반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관리사무소, 방재실/MDF실, 용역원휴게실, 피트니스, 작은도서관)의 형태, 입면, 창호, 색채, 디자인, 내부 실 구획 등의 계획은 실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사무소, 방재실/MDF실, 용역원휴게실 : 1506동 지상 1층 /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 지상 2층 설치 - 근린생활시설 : 1501동, 1506동 서측면 지상에 1개층 규모로 설치 (※ 상가 구획 및 연결 통로, 창호, 입면, 디자인, 색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로 피트니스 시설이 설치되어 소음 및 진동, 타격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로 설치되는 옥외 운동시설, 어린이/유아놀이터, 주민휴게공간 등과 근린생활시설 등 오피스텔 인근에 위치하는 시설 및 건축물로 인해 시각적 간섭 및 이용객에 따른 소음 및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오피스텔 부대복리시설 및 인근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는 별도 실외기실(공간) 또는 실과 인접한 외부공간 또는 저층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호실에 미관 저해, 소음, 진동, 수증기 발생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채광창, D/A)과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수거 시설, 주동 소방관련 급기용 D/A 등이 지상에 설치될 예정으로 시설물이 인접하는 일부 동 및 호실은 매연, 악취, 해충발생, 급배기 소음, 조망 등이 저해될 수 있으며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 시 시설물의 위치, 수량, 크기, 높이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준공 이후 단지의 AS, 하자 보수 등 입주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또는 복리시설 중 일부 공간을 일정 기간동안 시공사의 업무시설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단위: 원/VAT포함)

| 구 분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
| 회사명 |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 (주)럭키기술단 | 이수기술단(주) | (주)동화이엔씨 |
| 감리금액(VAT포함) | 5,084,588,960 | 1,040,112,314 | 1,115,318,794 | 139,886,339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김포 풍무역세권 C5블록 호반써밋 오피스텔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입니다.

| 보증서 번호 | 보증금액 | 보증기간 |
|--------------------------|-----------------|--|
| 제 05612026-104-0000100 호 | 35,885,360,000원 |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 |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해당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용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분양광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5조 및 제6조에 적법한 분양광고를 말합니다.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축물분양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전까지 잔금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주택 이외의 시설에 대하여 건축물분양법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회생절차개시신청·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분양신고필증 발급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 또는 해당 사업장의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분양광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오피스텔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및 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자) ㈜호반건설(등록번호 : 서울 220101, 2018.12.20.) / 사업장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파크2관)
- (인허가 사항) 허가번호 2026-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026.03.06.)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본 사업부지는 당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완납한 토지이나,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으로 현재 소유권은 무궁화신탁(주) 명의로 신탁되어 있습니다.
- (분양대금관리자) 케이비부동산신탁㈜
- (공급대상물의 소재지, 지목, 용도, 규모)
 - ① 소재지 : 김포 풍무역세권 C5블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27-1 일원)
 - ② 지목: 답 등

③ 용도: 공동주택, 업무시설(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④ 규모: 공동주택 지하3층~지상 38층, 업무시설(오피스텔)지하 2층 ~ 지상 26층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분양광고 및 분양사업장에 게시하였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구 분 | 상 호 | 주 소 | 법인등록번호 |
|------------|---------|--|----------------|
| 사업주체 및 시공사 | (주)호반건설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18 (우면동, 호반 파크 2관) | 204711-0007384 |

■ 사업지, 견본주택, 분양문의 안내

| 약도 | | 안내 |
|---|--------------------------------------|---|
| 현장 : 김포 풍무역세권 C5블록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27-1 일원) | 호반써밋 풍무Ⅱ 견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547-8 | 분양문의: 1670-6535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시간: 10:00 ~ 17:00 ※ 정부방침에 의해 '주52시간 근무제'가 본 견본주택에도 적용됩니다. ■ 운영기간: 분양종료시까지 ※ 분양일정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번호를 통하여 사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홈페이지 주소 |
| | | https://hobansummit-pungmu2.com/ |
| 견본주택 김포시 사우동 547-8 번지(풍무역 1번 출구) 현 장 김포시 사우동 527-1 일원(풍무역 1번 출구) | | |
| <p>※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호반써밋 풍무Ⅱ'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 | |